

서울특별시의회
제314회 임시회
주택공간위원회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

2022. 9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이 승 복

□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양천 4지역 이승복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기존 조례 제7조 주거복지사업에 12호에 “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
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입주·정착지원”을 신설하는 사
항입니다.

□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시원 및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입주
가 어려운 시민에게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을 하여 실질적인 주거
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
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
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